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2025.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목 차

<참고>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주요 내용

Ⅰ. 개요 ····· 1

1. 추진 목적 ····· 1

2. 추진 근거 ····· 1

3. 추진 방향 ····· 1

Ⅱ. 운영 기준 ····· 2

1. 학생 봉사활동 권장 시간 ····· 2

2.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 2

3.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4

Ⅲ. 학생 봉사활동 교육 운영 ····· 5

1.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 5

2. 학생 봉사활동 절차 ····· 7

3. 학생 봉사활동 지도 방법 ····· 11

<참고자료 1>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봉사활동(2015 포함) ····· 14

<참고자료 2> 학생 봉사활동 인정 및 인정 불가 기준 ····· 16

<참고자료 3> 학생 봉사활동 내용별 시간 인증 기준 ····· 22

<참고자료 4> 학생 봉사활동 각종 서식(예시) ····· 23

<참고자료 5> 학생 봉사활동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 시 참고사항 ····· 31

<참고자료 6> 가정통신문(예시) ····· 32

<참고자료 7> 월별 학생 봉사활동 추진 일정(예시) ····· 34

<부록> 전북특별자치도 봉사활동 전문기관 안내 ····· 35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개요

<table>
<tr><th>구 분</th><th>쪽수</th><th>주요 내용</th></tr>
<tr><td>2022 개정
교육과정
변경사항
(중1,고1 적용)</td><td>14</td><td>○ (영역 재구조화)
- 자율활동 → 자율·자치활동, ‘봉사활동’ 영역 탭 삭제
- (봉사활동) 활동 수준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봉사활동 편성 가능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초등학교(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봉사활동 영역 자체가 제외됨에 따라 자율·자치활동/동아리활동/진로활동 영역에서 봉사활동 가치를 담은 활동을 구성하여 자체 진행 후 해당 영역에 기재함</td></tr>
<tr><td>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td><td>2</td><td>○ 학생 봉사활동 권장 시간
<table>
<tr><th>구분</th><th>초(5-6학년)</th><th>중</th><th>고</th><th>비고</th></tr>
<tr><td rowspan="2">권장
내용</td><td>2년 통합 8시간
(연간기준 4시간)</td><td>3년 통합 30시간
(연간기준 10시간)</td><td>3년 통합 27시간
(연간기준 9시간)</td><td rowspan="2">전년
동일</td></tr>
<tr><td colspan="3">※ 특정 학년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중 지속적 실시 권장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권장 시수를 2/3이상 편성 권장</td></tr>
</table></td></tr>
<tr><td>「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
구성·운영</td><td>5</td><td>○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학교실정에 맞도록 5명 이상 구성 권장
- 역할
◦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 및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계획 수립</td></tr>
<tr><td>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td><td>12</td><td>○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지도 절차
<table>
<tr><th colspan="3">준비</th><th>실행</th><th>평가</th></tr>
<tr><td>사전교육</td><td>계획서
제출</td><td>학교승인</td><td rowspan="2">⇨ 안전사고 유의, 봉사활동을 통한 학습효과 증진</td><td rowspan="2">⇨ (학생)
봉사확인서 제출
(교사)
확인서 정리, 평가</td></tr>
<tr><td>프로그램
안내 및
사전협의,
지도</td><td>구체적
활동계획
포함</td><td>사전
학교장
승인 필요</td></tr>
</table></td></tr>
<tr><td>단순 물품 및
현금기부</td><td>17</td><td>○ 단순 물품 및 현금기부 기준 제시
- <u>단순 물품 및 현금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u>
예시) 헌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등</td></tr>
<tr><td>물품 제작 관련
봉사활동</td><td>17</td><td>○ 물품 제작 관련 봉사활동 기준 제시
- 이웃돕기활동 또는 캠페인활동에서 <u>학생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제작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u>(학교 연계 필수 조건 아님)
예시) 마스크 제작(캠페인활동), 목도리 제작(이웃돕기활동), 모자 뜨기(이웃돕기활동) 등</td></tr>
</table>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Ⅰ 개요

1 추진 목적

○ 참여와 협력의 봉사활동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나눔과 배려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 제공으로 학생 봉사활동 실적 관리의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기 주도적 계획·실천으로 자원봉사자로의 성장 기틀 마련

2 추진 근거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477호, 2024.3.1.)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24.2.17.) 및 같은 법 시행령(2021.1.5.)

3 추진 방향

○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준수

○ 학생 봉사활동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조

○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실시하며 권장 사항임

○ 학생 봉사활동 지도를 위해 학교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Ⅱ 운영 기준

1 학생 봉사활동 권장 시간

○ 학생 봉사활동의 이수시간은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및 수업시간 외)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을 포함하여 운영

학교급	학생 봉사활동 통합 권장 시수	비 고
초(5~6학년)	통합 8시간 이상 권장 (연간 4시간)	
중	3년간 30시간 이상 권장 (연간 10시간)	고입 내신 성적 산출 반영
고	3년간 27시간 이상 권장 (연간 10시간)	

○ 운영 방법

- 특정 학년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중 지속적 실시 권장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수 2/3이상 편성 권장

2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가. 기본 원칙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봉사자(학생)와 봉사활동 기관·단체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

○ 봉사활동은 무보수성, 비영리성, 공익성, 자발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운영 절차에 따라 편성·운영

○ 봉사활동 사전 계획(사전 계획서 교장 결재 또는 상담·지도 활동 등) 확인 강화로 내실 있는 봉사활동 추진

○ 인정 시간을 실제 봉사활동 시간보다 늘리거나 양도하는 등의 행위 금지

나. 인정 기준

○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수업시수+봉사시간) 이내 인정 원칙

- 평일: 7교시인 경우 1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 휴업일(토・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8시간 인정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할 수 없음

○ 봉사활동 1시간

- 교육과정 내: 초 40분, 중 45분, 고 50분
- 그 외 교내・외 봉사활동: 60분 1시간 산정

○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인정

※ <예시> 교외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 이동 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구분	출발	현장 도착	준비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휴식	현장 출발	도착	귀가
인정			활동인정 대상 시간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에 한하여 2시간 이내에서 이동 시간 추가 인정

○ 학년 말 학교생활기록부가 마감된 이후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

봉사활동 실적 수합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 다음 학년도 담임(담당) 교사가 수합	⇨	▶ 정정 사유, 정정 내용 제출 ▶ 증빙서류 첨부	⇨	▶ 이전 학년(봉사활동 실시 당시 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 학교생활기록부 수정메뉴 이용

3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기관

*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

○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기관

1365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중앙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www.1365.go.kr)
VMS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www.vms.or.kr)
DOVOL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중앙관리)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정보 포털 사이트(www.youth.go.kr)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하며 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의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것

○ 인정 가능 기관 및 인정 불가 기관 구분

인정 가능 기관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민간기관(공익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시설(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 기관의 경우도 포함) -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영리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세부 기준 참조	

○ 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대한 안내와 사전 봉사활동 계획 확인 강화

- 1365자원봉사포털 시.군자원봉사센터 및 VMS 기초지역관리본부와 연계하여 지역 내 봉사활동 인정기관 파악,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안내
- 개인 봉사활동 실시 전 반드시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해 인정기관 및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지도

Ⅲ 학생 봉사활동 교육 운영

1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가.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5인 이상 구성 권장)

- 교감(위원장), 봉사활동 업무담당 부장(부위원장), 위원(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 등으로 학교 실정에 맞도록 구성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준하여 구성

○ 역할

- 학교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학기 중 운영 계획 변경 지양)
-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 및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계획 수립
-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인정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인정

○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봉사활동은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할 수 없음

나. 단위학교 중심의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운영

○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 학교 운영 계획 수립

○ 봉사활동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동원하려는 각종 행사, 허위・편법 확인서 발급, 실적 부풀리기, 양도, 대리 등 비교육적 행태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타 기관에서 봉사활동 실적 인정 관련하여 협조 및 요청이 있을 경우 인정 가능 여부 검토 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 봉사활동 담당(담임)교사의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봉사활동 사전 교육, 사후 확인 강화

○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 기록 및 지속적인 관리 필요

✤ 학생 봉사활동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시 유의사항

-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입력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봉사활동은 '(학교)'로 입력
(위탁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학교)위탁기관명'으로 입력함)

- [활동 내용] 객관적인 봉사활동 내용 또는 제목을 간략하게 입력하며, 학생의 성장, 감상 등 학생의 특기사항을 드러낼 수 있는 **정성적인 평가내용 입력 불가**
  ※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등 기재할 수 없음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학생의 특기사항은 필요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 가능함
- 청소년단체활동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란에 '(개인)'으로 관련사항 입력함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초등학교(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봉사활동 영역 자체가 제외됨에 따라 자율, 자치, 동아리, 진로 영역에서 봉사활동 가치를 담은 활동을 구성하여 자체 진행 후 해당 영역에 기재함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참고

○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관리 소홀로 인한 민원 예방

<u>사례1.</u>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활동에 대한 사전 지도를 하지 않아 **학생·학부모가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 탑재된 봉사활동은 무조건 인정된다고 생각함**

<u>사례2.</u>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하기 애매한 경우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데도 **나이스로 연계된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검토 없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해 인정 불가한 봉사활동을 인정함**

○ 봉사활동의 취지와 방향을 충분히 공유하고,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비교육적인 봉사활동 방지

○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 기관 연락처를 확인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봉사활동 시간, 장소, 내용,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시 유선으로 연락하여 확인

○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을 적극 홍보하여 학생의 진로,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으로 전 생애 봉사활동의 기반 마련

※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학생 개인 또는 모둠이 자신들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 주제들에 대하여 스스로 봉사활동의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과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실천을 통한 학습 과정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 담당교사가 반드시 임장 지도하여 봉사활동의 취지 및 안전에 유의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계획서 승인 시 기관, 내용, 영역, 안전 등에 유의하여 검토한 후 승인

다. 학생 대상 봉사활동 소양 교육 실시

○ 봉사활동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 실시
- 학기 초 및 방학 직전 등 수시 교육 실시
-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소양교육(2시간 이내)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포함) 가능
-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소양교육 외에,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활동은 인정 불가. 단, 봉사활동 시작 전에 교육이 꼭 필요한 경우는 1시간 인정 가능

라.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홍보 강화

○ 학생 대상으로 학년 초 봉사활동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민원 발생 사전 예방

○ 학생 봉사활동 가정통신문 작성 시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통일된 인정 기준안 안내

2 학생 봉사활동 절차

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1) 학교교육과정(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

○ 학교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으로 학교의 연간 계획에 의해 추진하며 학년, 학급, 그룹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음

○ 학교 대청소 등 일상적 활동은 지양, 봉사의 의미를 함양하는 실질적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권장

○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학생들이 봉사활동의 전 영역에 걸쳐 고루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

○ 봉사활동 절차

봉사활동 계획 수립	→	봉사활동 참가자 **확보**	→	봉사자 사전교육 (태도 및 방법 등)	→	봉사 장소 배치	→	실무 지식 현장 교육	→	실 천	→	반성 및 평가 (인정 및 격려)	→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	차기 계획 반영

2) 학교교육과정 외(수업시간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 학년 초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다양하게 구성하여 봉사활동 기회를 확대하도록 함(봉사활동 종류의 예: 급식도우미, 방송도우미, 정보화기기도우미, 도서실도우미 활동 등)

※ <u>도우미 활동은 실시 일자별로 시간/분 단위 누가기록 필요(학년말에 출석부 등 증빙자료 제출)</u>

○ 특정 학생이 여러 종류의 봉사활동을 하거나, 한 종류의 봉사활동을 독점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시 기준 제시 권장(예: 두 가지 도우미를 같이 하는 경우, 1년 동안 같은 도우미를 계속하는 경우 지양)

○ 봉사활동 절차

봉사활동 계획 수립	→	봉사활동 참가자 **모 집**	→	봉사자 사전교육 (태도 및 방법, 관련 지식 교육 역할 분담)	→	실 천	→	반성 및 평가 (인정 및 격려)	→	학교생활 기록부 기 재	→	차기 계획에 반영

○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초등학교(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봉사활동 영역 자체가 제외됨에 따라 자율, 자치, 동아리, 진로 영역에서 봉사활동 가치를 담은 활동을 구성하여 자체 진행 후 해당 영역에 기재함

○ 지도교사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상황을 봉사활동 기록표에 기록

※ 학교별로 양식 구안 사용, 학생 개인별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생략

나.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미이용 시

○ 사전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봉사활동 절차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	봉사활동 계획 승인	→	계획에 따른 실행 후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실시 후에는 봉사활동 확인서에 활동기관으로부터 활동 내용을 확인받아 담임교사에게 확인서 제출

○ 봉사활동 확인서에는 학생명, 학교명, 활동 시간, 활동 장소, 활동 내용 및 의견, 확인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활동기관의 직인, 확인서 발급번호가 포함되어야 함

※ 발급번호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기록 내용이 부실할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발급기관에 확인 후「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인정여부 결정

(확인자의 서명과 활동기관의 직인이 없는 경우 인정 불가)

○ 봉사활동 확인서 양식은 학교에 항시 비치, 학교 홈페이지 게시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이용 시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당교사와 사전 상담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 필요

○ 봉사활동 절차

[학생]		[학생]		[학교]		[학교]
나눔포털, 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	봉사활동 실행 후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	나이스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학생들이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봉사활동 실적이 나이스로 전송된 내용을 지도교사가 확인 후 승인

○ 연계사이트 이용 개인봉사활동 절차
- 봉사일감 담임(담당) 교사와 사전 상담(가능여부 확인)
- 봉사활동 계획대로 실시
- 나이스 연계자료 확인(하루 인정 시간(8시간) 초과여부, 미인정 기관, 오탈자 수정)
- 미인정 기관에서 한 봉사실적은 반드시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미인정 결정

[나이스 기재요령]
-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한 봉사활동 실적 반영 시 다음 내용을 반드시 제외한 후 반영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봉사활동 실적
  2)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와 영리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
  3) 1일 8시간(수업시간과 봉사활동 시간 합산) 초과 시간
  4) 허위 봉사활동 실적 등

---

3) 운영 방법

○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위배되는 경우(기관, 분야, 내용 등)는 실적으로 미인정

○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전송을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전송 실패한 내용 캡처본과 함께 봉사활동확인서로 봉사활동을 인정

○ 학년 말(2월 말)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후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해 봉사활동을 한 경우, 다음 학년도에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입력(학업성적관리위원회 확인)

○ 봉사활동 계획서 승인 시에 봉사활동 인정기관 여부, 봉사활동 계획(내용), 지도교사 유무, 안전 등 학생들의 봉사활동 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기관에 협조 요청

○ 봉사활동의 전 영역에 걸쳐 고루 활동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 터전을 다양하게 안내하고 단계적 심화 과정으로 활동하도록 지도

○ 학생이 직접 청소년자원봉사 두볼(Dovol) 참여실적을 1365나눔포털 사이트를 통해 나이스로 전송하도록 지속적 안내

○ 담임교사는 학생이 봉사활동확인서를 직접 제출한 건과 나이스 기록 요청 시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실적이 중복 기재 되지 않도록 확인 필요

3 학생 봉사활동 지도 방법

가. 봉사활동 지도 단계

○ 학생 봉사활동은 ‘봉사학습’으로서의 교육적 의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도함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학교의 연간 계획에 의하여 매년 학년별로 〔사전 교육(1단계) → 프로그램 구성(2단계) → 봉사활동의 실행(3단계) → 봉사활동의 평가・발전(4단계)〕 과정을 거쳐 지도함

○ 심화 단계는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학생들이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운영함

구분	단계	지도 중점	세부 지도 내용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1단계	사전 교육 (봉사활동 기본 교육)	- 봉사활동의 개념, 의의 및 절차 - 봉사활동에 임하는 태도 - 활동 영역 및 유의사항 등
	2단계	프로그램 구성	- 교사.학생 상호 협의하에 봉사활동 프로그램 계획 및 구성 - 봉사활동 방법 교육 및 역할 분담
	3단계	봉사활동의 실행	- 봉사활동 장소 및 역할 점검 - 봉사활동 현장의 상황과 그에 따른 활동상의 유의 사항 이해 - 유사 시 대책 및 안전교육 -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봉사활동 참여
	4단계	봉사활동의 평가·발전	- 감상문 쓰기, 소감 발표 및 토론 -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반성 및 협의 -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 - 발전된 봉사활동 계획 수립 등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심화 단계	개별적·지속적 활동	- 계획 수립 **- 사전 지도(사전계획서 제출)** - 활동 및 평가 후 확인서 제출

나. 봉사활동 지도 절차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구분	활동 내용 및 방법
준비	○ 봉사활동에 대한 문제 인식, 사전 학습, 실행 계획 수립이 이루어짐 ○ 문제 인식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의 필요성과 활동 대상에 대한 이해를 의미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찾을 수 있음 ○ 사전 학습은 구체적인 활동에 필요한 지식 또는 기능의 습득 과정임 ○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전 조사, 실행 가능한 봉사활동 선정, 대상 기관 담당자와 협의, 활동 내용 및 준비물 점검 등이 이루어져야 함
실행	○ 학교 내에서 또는 학교 밖의 봉사 대상 기관이나 장소에서 봉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만나서 실제로 봉사활동 실행 ○ 안전사고 예방, 계획된 대로 실행 여부, 상황 변화에 따른 대처, 봉사자 간 협조 등에 유의하여 실시하도록 지도
평가 (반성 및 발전)	○ 봉사활동의 교육적 성과, 학생 및 봉사 대상의 만족도 등을 확인하고 활동 결과를 기록 ○ 프로그램 실행 직후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 ○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소감문 작성, 면접, 설문 조사, 간담회, 우수 사례 발표회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 ○ 지도교사는 추수 지도를 통하여, 봉사활동이 학생 개인에서 가족, 집단, 지역사회로 확대·발전될 수 있도록 함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구분		활동 내용 및 방법
준비	사전 교육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안내해야 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협의가 전제되어야 함 ○ 봉사활동에 대한 사전 준비 교육을 철저히 하며, 봉사활동 각 영역과 영역별 유의사항 안내 ○ 봉사학습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인지 점검 ○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요소 점검
	계획서 제출	○ 활동 대상과 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활동계획서 작성 ○ 봉사활동 대상을 물색하고 기관을 답사하여 자료를 수집 ○ 봉사활동 실행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해 협의

구분		활동 내용 및 방법
		○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수정·보완
	학교 승인	○ 개인별, 소집단별 봉사활동 계획은 **사전 학교장 승인 필수**
실행		○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봉사활동을 실행 ○ 봉사활동을 통한 학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 ○ 취미와 적성에 맞는 체험학습의 기회로 활용하고, 봉사활동이 내면화되도록 지도
평가 (반성 및 발전)		○ 봉사활동 실행 후 내용 평가 ○ 학생은 대상 기관에서 발부한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 ○ 담임교사는 봉사활동 확인서 진위 여부 파악 후 평가 ○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습득된 지식과 기능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발전시켜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수 지도

다. 봉사활동 지도 평가

◯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 봉사학습의 효과 파악을 위하여 봉사활동 프로그램별 목표 달성도를 평가
-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천 태도 함양 모색
- 체크리스트, 소감문, 발표, 토의 등을 통해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협의
-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

◯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기준(예시)

기 준	평가 관점(예시)
참여도	• 활동에 대한 참석 정도, 실천의 지속성 등
협력도	• 집단 활동에의 기여 정도, 실천 활동에 대한 협동성, 협력의 지속성 등
열성도	•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 활동에 대한 책임감, 적극성, 자기 주도성 등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기준

5.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 나. 평가 - (1) 학생 평가 - (나) 평가 관점과 평정 척도
②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로 평가 관점을 마련하고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평가 기준을 작성, 활용한다.

참고자료 1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봉사활동 내용

□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변경

변경사항

○ **(영역 재구조화)** 2015개정 4개 영역(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 → 2022개정 **3개 영역**(자율·자치활동/동아리활동/진로활동)으로 **나이스 전체 기능*** **변경**

○ **(봉사활동) 활동 수준**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봉사활동** 편성 가능

메뉴_ (화면명)	창의적 체험활동 나이스 주요 기능(안)
[교육과정] [학생생활]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생부]	○ **영역 명칭 변경** - ①**자율활동** → **자율·자치활동**, ②'**봉사활동**' 영역 **탭** 삭제 ○ **영역별 누가기록 내 봉사활동 선택 입력 기능** - ❶각 **영역**(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에서 '**봉사활동**' **체크 박스를 클릭** 시 ❷'**봉사활동**' **입력 창 활성화** ※ 해당 학생 '개인별 등록'과 '일괄 등록(반별)'이 가능하도록 구현 - 입력한 내용은 ❸'**봉사활동실적관리**' **탭**에 **자동 연계**되어 **시수 누계** ※ 학교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반별) 시수와 개인별 봉사활동 시수 실적 입력·관리, 현행과 같이 일자 순서대로 누적하되, **누적된 자료의 행 순서 변경 기능 추가**

창의적체험활동	❷ [학생부자료기록] [누가기록]
자율·자치활동관리	
동아리활동관리	
동아리활동반별조회	□ 일자 이수시간 활동내용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동아리활동관리(담임용)	❸ [봉사활동실적관리] - [반별] 탭 기능 개선
진로활동관리	
진로활동누가기록	□ 순번 번호 성명 일자 영역 활동내용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시간 이수시간 누계
❸ 봉사활동실적관리	

※ 실적연계 사이트(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한 봉사활동 전송 자료 연계는 현행과 같이 나이스 기능 유지

○ **학생부 양식**

-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변경 반영** 및 **봉사활동 실적 연계 기재**

※ **'학생부' 소관 부서에서 나이스 창체 관련 [학생부] 양식 변경 시 동일 적용**

2015 개정 교육과정 봉사활동 관련 주요 내용

1) 봉사활동 교육 중점 내용

(초) 봉사활동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이해 및 실천

(중·고) 학생의 취미·특기를 활용한 봉사 실천

2)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및 활동 집중 편성

4. 편성·운영과 지원 - 가. 편성·운영 - (1) 공통 지침

②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학교 급별, 학년(군)별 시수를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편중하여 편성하지 않는다.

③ 학교 급별, 학년(군)별, 학기별로 영역과 활동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영역별 지침

① 학생이 봉사를 실천하기 이전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 봉사의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깨닫게 한다.

②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③ 교외 봉사활동은 가급적 지역 사회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④ 봉사활동은 학교나 지역 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초등학교의 교외 봉사활동은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⑥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내 봉사활동과 더불어 지역 사회와 연계된 교외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중·고등학교의 교외 봉사활동은 사전 교육과 사후 평가를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봉사활동 영역의 활동별 목표와 내용

활 동	활동 목표	활동 내용(예시)
이웃돕기 활동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을 함양한다.	• 친구돕기활동 - 학습이 느린 친구 돕기, 장애 친구 돕기 등 • 지역사회활동 - 불우이웃 돕기, 난민 구호 활동, 복지시설 위문, 재능 기부 등
환경보호 활동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과 공공시설을 아끼는 마음을 기른다.	• 환경정화활동 - 깨끗한 환경 만들기, 공공시설물 보호, 문화재 보호, 지역 사회 가꾸기 등 • 자연보호활동 - 식목 활동, 자원 재활용, 저탄소 생활 습관화 등
캠페인 활동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기른다.	• 봉사활동 소양교육, 공공질서, 환경 보전, 헌혈, 각종 편견 극복 캠페인 활동 등 • 학교폭력 예방, 안전사고 예방, 성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등

참고자료 2 학생 봉사활동 인정 및 인정 불가 기준

◎ 학생의 모든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과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해 인정함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전송된 봉사활동의 인정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을지라도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위배될 경우 인정 불가
- 사전에 담임(담당)교사와 상담 등을 통하여 인정 기관, 활동내용 등에 대하여 확인 후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실시
- 수시로 봉사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나이스로 연계된 봉사활동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방법

- 봉사활동 내용이 너무 세부적이거나 간단한 경우, 입력되지 않은 채 전송된 경우 발생
- 학생이 봉사기관에 봉사활동 확인서를 수정 요청하여, 수정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수정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근거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이미 나이스로 전송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수정해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재전송하는 것은 시스템 상 불가하지만, 수정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출력하는 것은 가능)
- 띄어쓰기 및 맞춤법 오류, , &apos, &gt(난해한 부호) 등은 수정한 봉사활동 확인서 없이 담임교사가 수정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계획서 제출 생략 가능

3. 봉사활동 시간과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중복

-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학교행사(현장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후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하나 중복 인정은 불가

  예) 자율활동(체육대회)을 7시간 한 후 봉사활동을 2시간 실시하였다면 1일 8시간만 인정 가능하므로 1시간만 봉사활동으로 인정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또한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할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 활동 내용으로만 인정

※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초등학교(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봉사활동 영역 자체가 제외됨에 따라 자율, 자치, 동아리, 진로 영역에서 봉사활동 가치를 담은 활동을 구성하여 자체 진행 후 해당 영역에 기재함

- 학생교육원 입소 시간, 교외체험학습 시간, 행사활동 시간, 동아리 활동 시간 등과 봉사활동 시간의 중복은 인정 불가

4.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 학생,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반드시 필요 ★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에 대한 인정 기준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에 근거함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실적 인정 가능 기관의 조건
  -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 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인정 불가**
  - 노인요양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반드시 노인복지시설신고증 확인)**
  - 병원: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관리하는 병원)
- 봉사활동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활동영역, 내용,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어긋나면 인정 불가

5. 민간기관 · 사설기관에서의 봉사

- 민간기관 · 사설기관의 봉사활동도 가능하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단체)으로 활동영역 및 내용이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함

6. 봉사활동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1시간 인정,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등은 인정 불가
- **봉사활동과 관련 없는 교육, 회의 참석, 평가단 참여, 기자단 활동 등**은 인정 불가

7. 단순 물품 및 현금기부

- 단순 물품 및 현금의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예) 헌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모발 기부 등
- 단,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사전교육-캠페인-물품 및 현금 모금활동-기부-평가」의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거나, 외부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경우만 인정 가능(학교에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함)

8. 물품 제작 관련 봉사활동

- 이웃돕기활동 또는 캠페인활동에서 학생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제작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학교 연계는 필수 조건이 아님)
  예) 마스크 제작(캠페인활동), 목도리 제작(이웃돕기활동), 모자 뜨기(이웃돕기활동) 등
- 단, 봉사활동이 「사전교육-제작-평가」 등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하며, 물품 제작비 등의 학생 부담금 없이 제작에만 참여한 경우에 한하며 실제로 참여한 활동 시간만 인정. 제작 후 학생이 가져가는 경우 인정 불가
- 봉사활동 실적 자료(프로그램계획안, 활동 결과물 등)를 제출해야 하며, 물품 제작비 등을 학교나 외부 기관에서 부담하고 학생은 제작에만 참여한 경우에 한하며 실제 참여한 봉사시간만 인정

9.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

- 기부금 형태, 재료비 등 **활동비를 요구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 불가**
- 어떠한 명칭으로든 **비용(금품)을 납부하고 참여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음**(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을 포함하며, 비용(금품)의 많고 적음과 관계 없음)
- 다만, 봉사자 개인에게 소비되는 기본 교통비와 식비 수준의 활동비 일부는 허용 가능.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신중히 판단 후 인정 여부 결정

10.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 **학교교육과정 내에 편성하거나** 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한 봉사활동 모두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당해 학교장 명의로 발급**해야 함
- <참고자료 4> 봉사활동 각종 서식(예시) 참고

11.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의 출석 인정 결석 기간에 실시한 봉사활동

-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 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예) 교외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함

12. 신입생의 입학 전(해당 학년도 3월 1일~입학식 전) 봉사활동 및 졸업생의 졸업 후 (해당 학년도 졸업식 이후~2월말) 봉사활동 인정

- 해당 기간의 봉사활동 인정
-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에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3호에 학생이 재학 중 실시한 봉사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입학식 이전, 졸업식 이후라도 학년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입학식 이전의 봉사활동에 한해 사전계획서를 입학식 후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받음
  예) A중학교에서 B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된 경우 3월 1일에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B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A중학교의 졸업식 이후 2월 말에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A중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함

13. 종업식 이후에 실시한 초등학교 1~5학년, 중고등학교 1~2학년의 봉사활동

- 재학생(초등학교 1~5학년, 중・고등학교 1~2학년)의 종업식 이후 2월 말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인정. 2월 말까지는 당해 학년도에 해당하므로 당해 학년도 봉사활동으로 입력 가능함
-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이후의 봉사활동실적은 진급처리 이후 다음 학년도에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서 입력하되, 정정 전 반드시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증빙서류 첨부)를 거쳐야 함**
- 종업식 이후, 다음 학년도 정정 등 행정적인 절차의 불편함을 이유로 학년말 봉사활동을 금지하거나 다음 학년도에 인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14. 징계 관련 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 인정 불가
- 보호처분 3호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에 의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에 의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인정 불가

15. 봉사활동 시간에서 분 단위 인정 여부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분 단위는 절사하여 입력함. 다만, 동일 기관의 같은 종류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우 학기 말 또는 학년 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누가기록 증빙자료 필요)

16. 문화 공연 준비

-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 시간(리허설) 인정
-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인정 불가

17. 행사 참여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인정 불가
- 정부·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 형태의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인정 불가

18. 번역

- 공익적 목적으로 공식적 요청을 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번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만 인정
- '공식적 요청'이라 함은 학교에 요청한 공문,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활동 내용 등록, 공개된 홈페이지에 활동 내용 등록된 것 등을 의미
- 번역료 등의 수당을 받으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정

19. 선플 달기

- 선플달기운동본부 http://www.sunfull.or.kr
-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으로 '선플 달기' 작성 시 최대 12시간까지 봉사활동으로 인정
- 초 40자 이상, 중 50자 이상, 고 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20. 학생이 실무담당자의 실인만 찍힌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의 인정 여부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고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에 한함

- 봉사활동확인서는 학생명, 학교명, 활동시간, 활동장소, 활동내용 및 의견, 확인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활동기관의 직인, 확인서 발급번호가 포함되어야 함
- 다만 발급번호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기록 내용이 부실할 경우는 담임교사의 확인에 의해 봉사활동추진위원장의 실인으로 조치할 수 있음. 그러나 확인자의 서명과 활동기관의 직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21. 학생 봉사활동 계획서와 확인서 보관기관 및 보존기간

- 학기 중 학급담임 보관하다 학년말에 담당부서에서 수합 보관
- 학생 봉사활동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학생 봉사활동 계획서, 확인서도 이에 따름

22. 전출입 학생의 경우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보관기관

- 전출 시에는 전출일 현재까지의 활동 내용과 실적 자료를 전입교로 송부하고 증빙서류는 원적교에서 보관

23. 개인계획에 의한 비대면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

- 봉사활동이 「사전교육-실천-활동보고서 평가」 등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함
- 학생 본인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했는지 주관기관이 확인(실시간 쌍방향, 영상 저장 등)한 경우 또는 봉사활동 실천과정의 사진(시작전, 실천, 결과)이 포함된 구체적인 활동보고서 제출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인정 가능
- 실제 봉사활동한 시간만 인정하되, **학생 안전이 확보된 경우**만 인정 가능
- 학교는 봉사활동 주관기관의 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통해 승인 또는 인정

24. 헌혈

- 만 16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인 경우 가능
- 1회(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 당해 학년도 <u>3회까지 인정</u>
- 평일에 했을 경우, 수업시간과 상관없이(7교시, 8교시를 했더라도) 4시간 인정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 양도 금지
- 봉사활동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고,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해야 실적 인정(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 제출,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며 무리한 헌혈봉사가 되지 않도록 함)
- 실적연계사이트에서 전송된 헌혈의 경우에도 반드시 학부모동의서(소감록) 필요
- 학부모가 동의서(사후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학부모를 대리할 수 있는 보호자나 학생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단위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학생의 실정을 고려하여 승인 후 실적 인정 가능
- 헌혈활동이 나눔을 실천하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실천적 봉사활동이라는 교육적 의미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25.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한 기타 사례

-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 문예작품(그림, 글짓기) 공모전 응모
- 인구조사 참여
- 운동경기 또는 공연 관람
-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 영재교육 과정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 결석생의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동원하는 각종 행사
-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 추천
- 봉사활동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활동 참여
-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과 해외 봉사활동을 위한 국내 사전, 사후 모임
- 각종 행사의 단순 참여 활동(예: 각종 기념식 행사 참석 등)
- 진로체험 관련 활동(예: 학생기자활동, 자치법정 등)
- 각종 회의 및 토의 참석(예: 자치회의, 모의의회, 토론회, 평가단 등)
-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TIMSS, ICILS 등)에 응시 학생 수행시간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미인정(※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4(2019.1.2.)호)

26.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소양교육

-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소양교육(2시간 이내)은 실적으로 인정
-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소양교육 외에,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활동은 인정 불가
  단, 봉사활동 시작 전에 꼭 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1시간 인정 가능

27. 봉사활동 실비보상(교통비 8천원 등)이 있는 활동 인정 여부

-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을 사례로 받은 경우는 인정 불가
  단, 봉사활동 중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는 인정 가능(식비를 받은 경우는 인정할 수 없음)

28.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녀회, 경로당 등에서 실시된 봉사활동 인정 여부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지 내 주민(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을 경우 미인정
- 부녀회와 노인정 등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이 비영리기관(단체)이며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맞게 활동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으면 인정 가능

참고자료 3 학생 봉사활동 내용별 시간 인증 기준

【봉사활동 기관에서 활동영역 구분 입력 방법】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으로 구분하여 입력

활동영역	세부유형	세 부 내 용	권장 시간
이웃돕기 활동	지역사회 개발발전	집짓기, 수리 보조(전기 및 보일러 수리, 도배장판, 도색 등)	6시간
		공동체 마을만 들기, 아파트 공동체 실천활동, 주민자치활동	4시간
		농촌봉사활동, 텃밭 가꾸기	4시간
		알뜰시장 및 벼룩시장 봉사활동	4시간
		지역사회 바자회	3시간
		꽃길 가꾸기, 놀이터 보수활동	4시간
		지역행사 지원활동	6시간
	문화, 관광, 예술, 체육 진흥	문화재·관광 가이드, 문화해설	4시간
		문화예술시설 견학안내	3시간
		문화, 예술, 체육행사 지원활동	4시간
		문화체험, 취약아동 대상 수련활동 보조지도	4시간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서 (보조)지도자 활동	4시간
	민주시민 사회구현	여성차별개선활동, 아동인권보호활동	3시간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지원활동	3시간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분야 봉사활동	4시간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분야 봉사활동	4시간
		선거관련 봉사활동	4시간
	민원안내, 업무보조	공공기관 내 민원 안내, 사무협력, 서가 정리	3시간
		장애인 및 노인 민원 접수 보조 및 안내	4시간
		병동 내 및 재가세대 대상 도서대출 및 회수	3시간
		헌혈자 접수 및 안내	4시간
		김장김치 만들기	4시간
		나들이 보조	4시간
		노인·장애인 수발	4시간
		노인 놀이, 말벗 봉사	3시간
		도시락, 밑반찬, 물품 배달	4시간
		급식소 봉사활동	4시간
		보육, 음식 조리	4시간
		사무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작업장 보조	4시간
		청소, 빨래, 주변환경 정리	4시간
		식사보조	4시간
		목욕 봉사활동	4시간
		체육 보조활동	4시간
		국제기구 및 단체 지원활동	4시간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행사 지원활동	4시간
	일손돕기 재능나눔	음식 조리(제과제빵 포함)	4시간
		이·미용 봉사활동	4시간

활동영역	세부유형	세 부 내 용	권장 시간
		통·번역 봉사활동(A4용지 10페이지 기준)	3시간
		영정사진촬영 및 제작지원	4시간
		장애우 점자입력 봉사활동(A4용지 10페이지 기준)	3시간
	교통 안전 활동	등하교 횡단보도 지도	4시간
		교통안전교육 지도	4시간
		아동 안전지킴이 활동	4시간
	지도활동 재능나눔	멘토링(멘토링사업 참가자) 활동	4시간
		학교 교과목과 관련된 학습지도	4시간
		교육관련 지도활동(예술, 컴퓨터, 언어 등)	4시간
	위문공연 재능나눔	교도소, 감호소 위문(공연)활동	4시간
		공연 봉사활동	4시간
	재난관리, 구호활동	피해복구활동	6시간
		피해복구참여자 대상 급식활동	6시간
		피해지역 현장사무소 업무보조	6시간
		북한동포돕기 활동	4시간
		재해예방교육 보조지도	2시간
		피해지역모니터활동	2시간
환경보호 활동	환경보호, 시설정비 활동	환경정화활동, 재활용품 수거 및 분류	4시간
		문화재지역 환경정화활동	4시간
	지구살리기 실천운동	교실 및 환경교육 사회활동 참여	4시간
	환경감시	환경 보호 모니터링	4시간
캠페인 활동	의식개선 활동	모금활동 및 후원 캠페인	4시간
		헌혈 거리캠페인	4시간
		청소년 보호 관련 캠페인 활동	4시간
		북한동포돕기 캠페인	4시간
		부정주차금지 캠페인	4시간
		대민안전캠페인 및 재난재해모금 캠페인	4시간
		청소년유해업소 추방 캠페인활동	4시간
		의식계몽활동, 소비자보호 캠페인활동	4시간
		문화재보호 캠페인	4시간
		지구살리기 실천운동 환경 캠페인 활동	4시간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캠페인(1년 12시간 이내)	1시간
	헌혈	헌혈	4시간
기타	- 기타 구체적 활동 내용은 학생, 학급, 학년,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학교에서 기준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 권장시간은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의 발육 및 건강 보호에 목적이 있음		

※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하되 학교에서 자율 결정**

참고자료 4 학생 봉사활동 각종 서식(예시)

[붙임 4-1] 학교단위 봉사활동 연간 계획서

학교단위 봉사활동 연간 계획서

순	일시	봉사시간	활동영역	세부유형	세부내용	봉사단체 (학년, 학급)	주관 (담당자)

[붙임 4-2] 개인 봉사활동 실시 계획 및 확인서

개인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

<table>
<tr><td>인 적
사 항</td><td colspan="2">학교명: 학교
학 번: 학년 반 번 성명 : (인, 서명)</td></tr>
<tr><td colspan="2">계 획 서</td><td>확 인 서</td></tr>
<tr><td colspan="2">활동일시: 20 년 월 일(일간)
시 ~ 시까지 (시간)</td><td>활동일시: 20 년 월 일(일간)
시~ 시까지 (시간)</td></tr>
<tr><td colspan="2">대상기관 :
활동장소 :</td><td>활동장소:</td></tr>
<tr><td colspan="2">활동영역 :
활동내용 :</td><td>활동영역 :
활동내용:</td></tr>
<tr><td colspan="2">유의사항 :</td><td>의 견:</td></tr>
<tr><td colspan="2">위와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서명)
<table><tr><td rowspan="2">결재</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able></td><td>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기관명: (직인)
(TEL.)

확인자 직급
성명 (인, 서명)
<table><tr><td>확인서 발급번호</td><td></td></tr></table></td></tr>
</table>

※ 활동 전에 계획서 결재를 받은 후 활동할 것(**전결 활용**)
기관명, 직인, 확인서 발급번호가 있어야 함

※ 활동영역: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붙임 4-3] 헌혈 학부모동의서 · 사후 확인서

헌혈 학부모동의서·사후 확인서		결재				
인적 사항	○○고등학교 (　　)학년 (　　)반 (　　)번 성명(　　)					
헌혈 일시	20　년　　월　　일, 총 (　　)시간					
헌혈 주관 기관						
봉사 영역	캠페인활동					
활동 내용	헌혈					

위와 같이 자녀의 헌혈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학부모 성 명 :　　(인, 서명)

○○ 고등학교장 귀하

※ 결재란은 학교 전결 규정에 따라 수정 사용

[붙임 4-4] 단체 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발급번호:)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단체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단체봉사 구분	정규교육과정 내 봉사활동 ( ) / 정규교육과정 외의 봉사활동 ( )		
인적 사항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성명 : ○○○ 외 명(총 명)		
봉사활동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봉사활동 기관	○○초 · 중 · 고등학교	기관 연락처	
봉사 영역	이웃돕기활동( ) 환경보호활동( ) 캠페인활동( )		
활동 장소			
활동 내용			

봉사활동 참여자 명단									
학년	반	번호	성명	인정시간	학년	반	번호	성명	인정시간

위 학생들은 위와 같이 단체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 ○ 성명 (인, 서명)

확인기관명 : ○ ○ 초 · 중 · 고등학교장 (직인)

[붙임 4-5] 자기주도적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계획서(개인용)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계획서 (개인형)	결재				

프로젝트명	
인적 사항	○○초 · 중 · 고등학교 (　　)학년 (　　)반 (　　)번 성명(　　)
활동 기간 및 시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간,　총 (　　)시간
주관 기관	
봉사 장소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	

차시	활동일시(월/일)	봉사활동 영역	봉사활동 내용	봉사주관기관	봉사 장소
1					
2					
3					
4					
5					
6					
7					
8					
9					
10					

위와 같이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성명 :　　(인, 서명)

○ ○초· 중 · 고등학교장 귀하

※ 결재란은 예시이므로 학교 전결 규정에 따라 수정 사용

※ 위의 서식은 학교별로 적절하게 변경 가능하며 참고용입니다.

[붙임 4-6] 자기주도적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계획서(모둠용)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계획서 (모둠형·융합형)				결재				
프로젝트명								
인적 사항	학 번	성 명	비 고	학 번	성 명	비 고		
활동 기간 및 시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간, 총 ( )시간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								

차시	활동일시(월/일)	봉사활동 영역	봉사활동 내용	봉사주관기관	봉사 장소
1					
2					
3					
4					
5					
6					
7					
8					
9					
10					

위와 같이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성명 : (인, 서명)

○ ○중 · 고등학교장 귀하

※ 모둠형 또는 융합형에 따라 인적사항 비고란에는 학생대표, 학부모, 교사로 표시

※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는 진로 및 특기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결재란은 예시이므로 학교 전결규정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붙임 4-7] 봉사활동 소감록

(　　) 봉사활동 소감록

인 적 사 항	학교명: 학교 학 번: 학년 반 번 성 명: (서명)

* (　　)을 하게 된 동기, 목적,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씀

위와 같이 (　　) 봉사활동을 하고 소감문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참고자료 5 **학생 봉사활동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 시 참고사항**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 시 유의사항

◎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 봉사활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합니다.
- 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근거하여 자녀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기관의 활동이라도**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위배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해야 합니다.

-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전송하면 학부모님께서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확인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과정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는 학부모님의 자녀 아이디·비밀번호 확인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14세 미만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안내 가능).
- 중학생의 경우 학생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지침」을 참고해 주십시오.
- **이 외 봉사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단위학교별로 가정통신문을 작성하여 안내 바랍니다.**

※ 가정통신문 발송과 함께 학교 홈페이지 탑재 요망
※ 온라인 교육자료 또는 콘텐츠 활용한 경우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수시 안내

※ 위 내용은 학생들이 봉사활동 시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학교상황에 적합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시고, **봉사활동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학년 초 학생 대상 **소양교육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6 가정통신문 예시(중학교용)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및 실적인정 기준 알림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안내 ※

1. 봉사활동의 목표

가. 타인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

나. 나눔과 배려의 봉사활동 실천으로 이웃과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기르고, 호혜 정신을 기른다.

다. 지역사회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진다.

2. 개인 봉사활동 흐름도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	봉사활동 계획 승인	➡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당(담임)교사와 사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학생]		[학생]		[학교]		[학교]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	봉사활동 **실행** 후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	나이스에서 1365자원봉사포털로부터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후 **승인**	➡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3)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하는 기관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법인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

4)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 (당일 수업시수 + 봉사시간 = 8시간 이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인정 가능 시간: 8시간)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임
- 학생의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인정 불가
- 나눔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 기관 연락처를 확인서에 기재함을 의무화함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분 단위는 절사(단, 같은 종류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는 학기 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기록)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 정리, 홍보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인정 안 함
-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일체의 활동 (재료 구입 후 제작 기부 활동, 연회비, 활동비 등을 내야 하는 활동) 인정 불가
- 물품 및 현금 기부, 해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문화 공연의 경우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 시간은 인정하되,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제외함.
-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가능
- 영리기관[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인정(사립 어린이집 미인정)
  - 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개인병원은 인정 불가)
  - 노인요양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
  - 병원: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 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 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관리하는 병원
    (개인병원은 인정되지 않음)
-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경우는 「학교봉사활동 추진위원회」 협의를 통하여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함

3.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 봉사활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합니다.
- 봉사활동의 기본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근거하여 자녀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주도 프로젝트형봉사활동(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해야 합니다.

-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전송하면 학부모님께서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확인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과정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는 학부모님의 자녀 아이디·비밀번호 확인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14세 미만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안내 가능)**
- 기타 봉사활동 인정 여부가 궁금하실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

○ ○ 중 학 교 장

※ 위 내용은 학생들이 봉사활동 시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교상황에 적합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시고, 봉사활동에 관한 세부내용은 학년 초 학생 대상 소양교육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홈페이지 탑재 요망

참고자료 7 월별 학생 봉사활동 추진 일정(예시)

월별	업무추진	세부 계획	유의사항
3월~4월	봉사활동 운영계획 수립	- 반드시「**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구성	학교교육 계획에 의거 수립
		-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연간 계획 수립** - 교내봉사활동 프로그램 담당교사로부터 교내 봉사활동 추진 계획을 접수·수합하여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심의 후 결재	
		- 학교별「봉사활동 운영 계획」수립	
		- **교사, 학부모에 대한 봉사활동 관련 연수 실시** (가정통신문 발송, 홈페이지 게시 등) **- 학생에 대한 봉사활동 소양 교육**	
연중	봉사활동 실시 및 홍보	-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1학기 말	봉사활동 중간 점검	-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3학년 (**마감 이전에 권장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10월~12월	생활기록부 기록 점검	- 담임교사의 봉사활동 기록 후 **시간 확보가 안 된 학생 지도**	
12월~3월 초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보관 평가	- 담임교사의 생활기록부 기록 최종 확인 - 학급별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수합·보관	반드시 학생 확인 필요
		- 봉사활동 운영 평가 - 다음 해의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부 록 전북특별자치도 봉사활동 전문기관 안내

1365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	www.1365.go.kr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	홈페이지	www.vms.or.kr		
청소년자원봉사 DOVOL (e-청소년)	홈페이지	www.youth.go.kr		
(사)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주 소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 3길 61, 4층		
	전화번호	063-227-1365	팩스번호	063-227-1364
	홈페이지	www.jbvolo.or.kr		
전북특별자치도 활동진흥센터	주 소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64, JK 사이언스 2층		
	전화번호	063-232-0479	팩스번호	063-287-0479
	홈페이지	www.jb0479.or.kr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주 소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83, (금암동)		
	전화번호	063-224-1861~2	팩스번호	063-224-1863
	홈페이지	www.jbcsw.or.kr		
(사)전주시자원봉사센터	주소/전화번호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55		063-273-1365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	주소/전화번호	군산시 삼화안길 9		063-451-1365
(사)익산시자원봉사센터	주소/전화번호	익산시 동서로 355, (영등동)		063-837-1365
(사)정읍시자원봉사센터	주소/전화번호	정읍시 벚꽃로 321		063-538-1365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	주소/전화번호	남원시 광한북로 57, 1층		063-636-1365
(사)김제시자원봉사센터	주소/전화번호	김제시 화동길 105, 2층(요촌동 105-1)		063-544-1365
(사)완주군자원봉사센터	주소/전화번호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89, (구봉동읍사무소 2층)		063-290-2218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	주소/전화번호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6		063-432-1364
무주군자원봉사센터	주소/전화번호	무주군 무주읍 교동1길 13, 3층		063-323-2620
(사)장수군자원봉사센터	주소/전화번호	장수군 장수읍 군청길 19		063-351-5017~8
임실군자원봉사센터	주소/전화번호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129		063-642-3650
순창군자원봉사센터	주소/전화번호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27, 1층		063-653-2660
(사)고창군자원봉사센터	주소/전화번호	고창군 고창읍 월곡14길 19, 2층		063-560-8098
부안군자원봉사센터	주소/전화번호	부안군 부안읍 당산1길 18		063-580-4841

※ 학생 봉사활동 웹사이트 운영(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교육정보>학생봉사활동)